대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43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4.

발 의 자:이 용・김성원・서정숙

신원식 · 김형동 · 배현진

주호영 · 배준영 · 김승수

장제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(이하 "진흥기본계획"이라 함)을 수 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.

그런데 「독서문화진흥법」,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등의 문화관 런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대권도 진흥 및 대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수립"을 "5년마다 수립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	제5조(진흥기본계획의 수립・시
행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	행 등) ①
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	
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	
계획(이하 "진흥기본계획"이라	
한다)을 <u>수립</u> ·시행하여야 한	<u>5년마다 수립</u>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